

“소급효 원칙 적용될 경우 상당한 부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펴낸 「베른협약 가입과 우리의 대책」

1886년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창설된 베른협약은 현재 세계 90여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가장 수준 높은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87년 신저작권법의 시행과 더불어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한 이래 이 베른협약의 가입논의가 꾸준히 진행중에 있다.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용권)가 저작권연구자료집의 하나로 최근 내놓은 「베른협약 가입과 우리의 대책」은 베른협약 가입을 전제로 그 대응방안을 폭넓게 모색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위원회 이호응 연구원이 작성한 이 자료집은 베른협약의 개관과 최근 동향을 비롯해 우리나라 저작권법과의 관계, 협약 가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로 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구체적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중 결론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발췌, 요약한다.

베른협약 가입 전제한 대응방안

베른협약 가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기본방향은 첫째, 동협약이 국제규범이란 틀 속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문제되는 규범의 내용 안에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해외 저작물 이용에 있어 집중관리나 적절한 중개방식을 원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교섭이나 과다경쟁을 피하는 것과 이용 유통 체계를 개선하는 등 저작권 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접근해야 한다. 셋째, 저작권법의 실체에서가 아닌 절차면에 있어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의 저작권 등록에 일정한 효력을 더 부여함으로써 자국 저작물 보호를 피하는 방식이다. 넷째, 저작권법 이외의 관련법제를 통한 접근도 필요하다. 외국 저작물 관리자의 권리남용에 대비한 관련법제의 정비를 통해 공정한 저작물 이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저작물 수출국 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적절한 법제도의 완비와 그 시행이 기본이 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육성책이 마련돼야 한다.

베른협약과 우리나라 저작권법과의 관계는 대체로 유사한데, 부분적으로 상이한 점도 발견된다. 이들중에는 우리나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있다. 예를 들어, 동협약상의 저작권 제한의 하나인 ‘신문 및 방송을 위한

베른협약과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부분적으로 상이한

점도 발견된다. 이들 중 ‘소급효원칙’의 문제는 만일 그대로 적용된다면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례에 따르면, 가맹예정국들은

동협약의 예외조항에 근거해

소급보호원칙 적용의 조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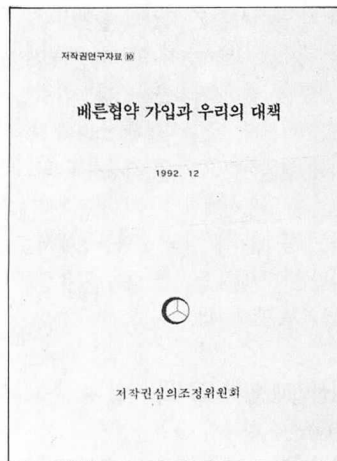
국내법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후

가입했음을 알 수 있다.

이용’은 우리의 저작권법에 도입한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기대되나, ‘개발도상국 특례규정’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더욱이 ‘소급효원칙’의 문제는 만일 그대로 적용된다면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협약의 규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대응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번역권 강제허락제도—우리에게 있어 번역권은 주로 이용대상 권리로 취급된다. 따라서 베른협약상 번역권에 대한 강제허락제도는 적어도 법제상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할 때 동협약상의 번역권 강제허락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동협약에 맞춰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따라서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 우리나라 저작권법 삼자의 연관문제가 된다. 세계저작권협약에서는 베른협약과의 관계를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에 동시 가입한 국가간에는 베른협약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협약간의 문제는 이 규정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베른협약과 상치되기 때문에 이를 동협약상의 내용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도 개정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해 동제도가 베른동맹국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즉, 세계 저작권협약 가입국에만 우리의 동제도가 적용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미국, 일본 등이 국제협약 가입시 이러한 특별법 제



정을 통해 자국의 저작권 질서를 보전했다는 전례를 감안할 때,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 소급효문제—베른협약상의 소급효원칙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급효란 법률의 효력이나 법률요건의 효력이 법률시행전 또는 법률요건 성립시 이전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케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베른협약은 제18조 제1항에서 이러한 소급효를 그 중요 원칙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연혁을 보면 이러한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해 국가간의 타협으로 이뤄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와 많은 관련이 있는 동협약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급보호에 대한 예외조항을 주목해보면, 당초의 협약안은 이 소급보호를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성안했다가 현행협약 제18조 제3항의 모태가 된 그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을 각국의 합의에 따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한 당시의 회의록에는 저작자의 허락없이 외국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복제하거나 실연해왔던 사람의 이익 고려라는 사실상의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즉, 동협약의 예외에 대해서는 당시 가맹예정국들의 합의에 따라 이뤄져 왔으며, 이 예외에 따라 많은 창설국이 소급보호원칙 적용의 조건을 국내법으로 제한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저작권법과의 차이 검토해야

동가맹국의 소급보호 원칙에 대한 제한의 예를 들어보면, ▲베른협약 발효후 일정기간 동안 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기의 이용(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일본) ▲협약발효 당시 제작돼 있는 복제물의 유통(독일, 스위스) ▲협약 발효전 인쇄 이외의 방법으로 고정됐다가 공연된 무용저작물과 무언극에 대한 비보호 선언(독일, 덴마크) ▲적법하게 번역물이 출판된 경우 번역자의 동번역물에 대한 복제, 배포, 공연권의 보유(독일, 덴마크) ▲번역권이 공중의 자유이용 상태에 놓인 소급보호 배제(영국)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그후의 가맹국들은 협약 발효후 일정기간 복제물의 발행을 허락하도록 한다거나(오스트리아, 그리스, 일본), 일정기간 복제물의 제작을 위한 기기의 이용을 허락하는(오스트리아: 3년, 헝가리: 4년, 이탈리아 및 일본: 5년) 등의 예외를 두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동협약상의 소급보호원칙에 또 팔적이라 할 수 있는 예외조치(불소급 원칙에 해당)를 취하고 가입했다. 또한 최근 동협약에 가입한 중국도 적잖은 예외조치를 취하고 가입했다.

이러한 각국의 예외조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즉 동협약에 가입할 때 적어도 미국의 경우에 준하는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베른협약 가입과 관련해 동협약과 우리나라 저작권법과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어려움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나름대로 살펴보았으나,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 또한 그 차이점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됐다고 해도 이를 기존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시행할 것인지 또는 특별법으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UR에서의 새로운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범, 인접권협약의 가입, 베른협약의 새로운 추가의정서 채택, 한·미간 등 양자협정문제, 국내 저작자와 그 이용자의 요구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저작권 질서를 최대한 보전하는 데 보다 유리한 특별법을 통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 정소연 기자